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직권 산정 결과 통지 등에 대한 전자문서 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고지 활성화(안 제16조의4, 제25조)

보험료 직권 산정 결과 통지 및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여부 통지 등에 대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명확화(안 제3조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사항을 기존 ‘사업증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중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등 사본
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8조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
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에는 그 사본)”을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사
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며,”으로 한다.

제16조의4 제목 외의 부분 중 “결과”를 “결과(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알려주어야 한다”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정 내용 등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의2 서식, 별지 제22호의20 서식, 별지 제22호의21 서식, 별지 제22호의22 서식, 별지 제55호의3 서식, 별지 제59호 서식, 별지 제6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사업장관리번호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있음 []없음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본사	명칭	사업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지	팩스번호			
현장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현장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구분		[]도급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면허번호		계 약 일		년 월 일
	건축허가(신고)번호		계약서상 착공일		년 월 일
	총 공 사 금 액	계약금액 (부가세 제외)	원	실제 착공일	년 월 일
		재료 시가환산액	원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합계액	원	벌목재적량	m ³
		발주공사 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원	벌목 상시근로자수	명
	발주자 성명		발주자 연락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가입승인 여부	[]승 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년 월 일
	[]불승인		산재보험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건설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1호의 경우는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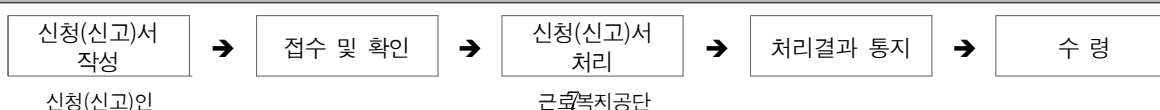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별목업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부담금 포함)를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건설업 및 별목업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히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7. "별목 상시근로자수"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10호서식] <개정안>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사업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 개시 []사업 종료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일괄적용 사업	명칭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건설공사 개시	공사명	
	총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원
	발주공사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원
	공사기간	
	현장 소재지	현장 전화번호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해당 []비해당
	발주자명	공제가입번호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별목작업 개시	별목 현장명	전화번호
	현장 소재지	
	별목 재적량	별목기간
	인원	발주자명
지점·지사 ·공장 등 개시	지점·지사·공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사업 종료	개시번호	
	명칭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별목허가서 사본 1부(별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며, 산재보험 건설공사 및 별목작업 외의 사업 개 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건강보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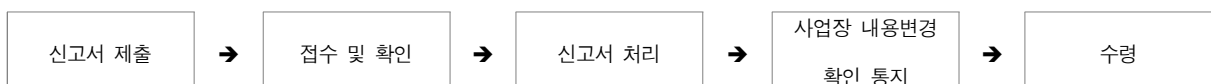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초본·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처리 절차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자 (대표자/ 공동 대표자)	변경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항목	변경일(YYYY.MM.DD)	변경 내용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 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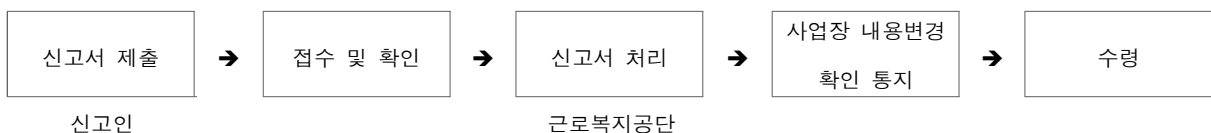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
4. “종류(업종)” 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종류(직종)” 란에는 노무제공자 직종의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안>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예술인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변경항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항목	변경일	변경 내용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종류(직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가입자)
 []보험사무대행기관
 12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 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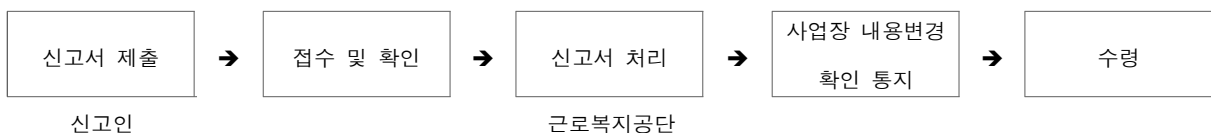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
4. “종류(업종)” 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종류(직종)” 란에는 노무제공자 직종의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건설공사 또는 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2호의20서식] <개정안>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노무제공 플랫폼(온라 인 플랫폼) 사업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종류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	
	노무제공자 직종 [] 쿼서비스기사 [] 음식배달기사 [] 대리운전기사 [] 화물차주		
주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고용업종코드	
산재보험 성립일		산재업종코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제4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14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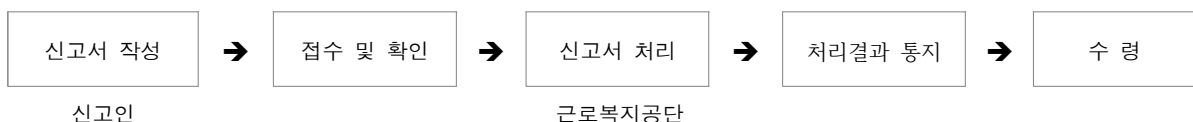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2. 위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인은 사업의 소재지, 사업주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인은 위 신고서와 별도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 체결 시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각각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고인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및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월 보수액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6.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고용·산재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보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 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수를 적습니다.
2. “주된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 란에는 주된(본사) 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달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2호의21서식] <개정안>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사업장명	전화번호

연번	신고사항(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1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2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3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4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5	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름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제4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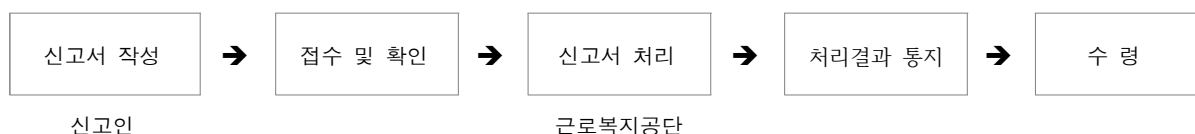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별지 제22호의20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 제출 시 적은 노무제공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 시 직종을 컨서비스 기사로 신고한 경우,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위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인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22호의22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사항란”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이용 사업장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이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2호의22서식] <개정안>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사업장명	전화번호	

연번	신고사항	
1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일	
2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일	
3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일	
4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일	
5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제4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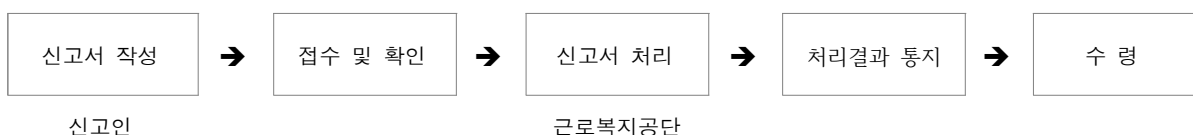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위 사업종료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종료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신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화물차주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등록번호” 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 사업장명” 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3.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일” 란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종료한 날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전자우편주소
	근로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업태	종목 (주생산업종)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원)
	사업의 내용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예 [] 아니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험가입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사항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보험관리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단기에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근로자 수” 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사업개시일” 란과 “업태와 종목” 란에는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의 내용” 란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란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산재보험 관리기구	명 칭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공동대표자)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리기구 내역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정관 또는 규약			
	그 밖의 사항			

※ 관리기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일련번호	구성원구분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본사산재관리번호	변경사유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규
					[] 탈퇴
					[] 신규
					[] 탈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에 한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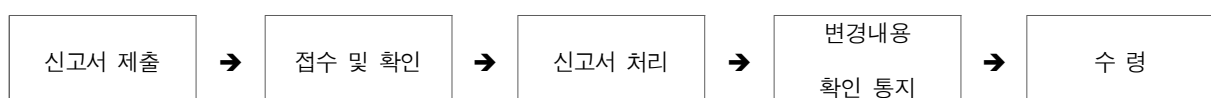
유의사항

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과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2. 관리기구 내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일자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3. 관리기구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험의 가입·해지신청) ① (생략)	제3조(보험의 가입·해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 ----- ----- ----- ----- <u>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등 사본을 말한다)</u> ----- -----.
1. 사업자등록증	1. <u>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생략)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	② ----- ----- ----- ----- -----.

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
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3. (생략)

③ ~ ⑦ (생략)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
· 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제3
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
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
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
(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
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목작업 허가
서 사본(별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산재
보험에서 건설공사 및 별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
· 종료 신고 등) -----

----- 사업자등록증명(사
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며, -----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

[illegible]

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

말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며,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

--- 결과(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 3. (생략)

③ (생략)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

-----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
-----.

1.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알려주어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정 내
용 등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알
릴 수 있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3. (생략) ③ (생략)	<u>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u> <u>며,</u> -----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